

아주대학교 학생설계전공 운영기준(안)

제정 2023.02.08.

개정 2025.02.2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한 학생설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생설계전공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학생설계전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생설계전공의 신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설 신청시기: 시행 학년도 6개월 이전 소정 기간
2. 신설 절차 (개정 2025.02.28.)
 - 1) 전공설계지원센터 설계상담
 - 2)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선정
 - 3) 학생설계전공 자문위원 자문
 - 4) 학생설계전공위원회 심의
 - 5)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6) 총장 승인

제5조(교육과정) ① 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생설계전공에서 요구하는 36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6학점까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학생설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생설계전공에서 요구되는 21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3학점까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학생설계전공을 마이크로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생설계전공에서 요구되는 최소 9학점, 최대 15학점 이내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④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제 1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 요건은 자유전공학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02.28.)

⑤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교과목의 난이도, 개설학과 및 시기(학년·학기)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단,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계약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포함할 수 없다. (개정 2025.02.28.)

⑥ 학생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은 아래의 각 호를 포함한 기편성된 과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3학기 이상의 이수계획
2. 3학년 이상을 수강대상으로 하는 전공과목 50%이상을 포함하여 구성
3. 이수학점의 1.5배수 이상 편성

⑦ 타대학 수학 교과목 전공 인정 학점은 12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타대학 수학 2개월 전 “타대학 수학 전공 학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기이수 교과목은 타 대학 수학 전공학점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⑧ 학생설계전공의 심의는 별표1의 심의 기준을 적용하고, 학생설계전공위원회는 심의 기준의 70점 이상인 학생설계전공에 대하여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02.28.)

⑨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는 주제형 교과목 묶음인 ABC(Ajou Block Combination)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02.28.)

[관련 정의]

- ABC: 2~3개 과목 단위로 세분화된 주제의 학습을 위한 교과목 묶음 단위
- ABC팔레트: ABC의 탐색과 조합을 지원하는 자기주도 융합교육지원 플랫폼

제6조(전공 이수) ① 학생설계전공은 본교에서 3개 학기 이상(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 직전 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단,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에 한하여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2.28.)

② 학생설계전공은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업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마이크로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단, 자유전공학부 학생에 한하여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5.02.28.)

③ 기 승인받은 학생설계전공에 대하여 타학생이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 학생설계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서식을 구비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8.)

⑤ 승인받은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서식에 따라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설계전공위원회 및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① 학생설계전공에는 지도교수를 배정하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 준비 단계부터 학업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도를 수행한다. (신설 2025.02.28.)

② 지도교수에게는 소정의 학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2.28.)

제8조(학위수여) 학생설계전공 이수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생설계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9조(학칙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2항은 기존에 승인된 학생설계전공의 지도교수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1> 심의기준

| 분류 | 세부사항 | 비고 |
|---------------------|--------------------------------|------|
| 전공의 독창성과 적절성 (30점) | 전공의 독창성 <삭 제> (10점) | <삭제> |
| | 전공명과 학위명의 적절성 (10점) | |
| | 전공 목표의 구체성과 적절성 (10점) | |
| 교과과정 (30점) | 교과목의 난이도 (10점) | |
| | 교과목 구성의 적절성 (10점) | |
| | 교과목 이수체계의 체계성, 논리성 (10점) | |
| 이수계획 (20점) | 설계전공 이수계획의 적절성 (10점) | |
| | 과목 개설의 안정성 (최근 2년간 개설여부) (10점) | |
| 진로계획 및 학생의 소양 (20점) | 학생의 목표 및 진로계획 (10점) | |
| | 학생의 지적소양과 의지 (10점) | |